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799호 2021. 7. 2.(금)

www.jeonbuk.go.kr

훈 령

- 전라북도 훈령 제1783호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 1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점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15호 공사중단 건축물(무주군 관광호텔) 정비 선도사업계획 고시 23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18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24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0호 택시 감차계획(4개 사업구역) 고시 27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2호 장계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 29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5호 산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저수지 준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32
-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6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33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8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34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95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35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96호 건설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36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97호 건설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38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98호 비영리사단법인 신규등록 공고 40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0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41
-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08호 주민조례 개정 청구명세사항 공표 공고 42

시군행정

- 군산시 고시 제2021-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45

회람									
-----------	--	--	--	--	--	--	--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군산시 고시 제2021-97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46
○ 익산시 공고 제2021-17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48
○ 정읍시 공고 제2021-10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 공고	50
○ 정읍시 공고 제2021-102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 공고	53
○ 김제시 고시 제2021-7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김제시 요촌동 서주주택 아파트) 고시	56
○ 김제시 공고 제2021-564호 도시계획시설(검산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57
○ 완주군 공고 제2021-996호 소양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	63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전라북도 훈령 제1783호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간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하여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개별 공공건축, 공공사업의 전체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민간전문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도 및 도의 사업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도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자문 대상)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설계비 1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설계·시공하고 개선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할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등에 따른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등에 따른 공공

시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농산어촌 정비 및 개발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5. 어촌뉴딜300사업, 생활SOC사업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 및 시범 사업에 관한 사항
- 6. 마을만들기 사업, 가로특화사업,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 7. 중앙부처 또는 도가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 1. 총괄건축가: 1명
- 2. 공공건축가: 20명 이상 30명 이하

② 모집 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 민간전문가의 자격은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임기) 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전라북도 건축기본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유 등으로 민간전문가를 새로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 민간전문가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전문가의 임기 만료로 재위촉하는 경우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촉한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참여, 실적 저조 등)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7조의 행동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경우
-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운영 등) ① 총괄부서는 총괄건축가와 매주 1회 실무회의를 실시한다.

②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정기회의(세미나)를 월 1회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회의(세미나)는 대면 및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총괄건축가와 총괄부서의 장은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시 정책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사업부서 간 워크숍(상·하반기)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총괄건축가의 부재 시 공공건축가 중에서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문 절차) ① 사업부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총괄건축가와 협의하여 제1항의 요청에 대한 담당 공공건축가의 배정을 결정한다.

④ 사업부서는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는 사업별 자문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간담회 실시) 공공건축가, 사업부서,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이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전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문 시기) ① 사업부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에서 각 1회 이상 공공건축가에게 자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공모방식 결정단계, 시공단계, 시설 운영·관리단계에서는 필요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가를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사업자문 실시 등) ① 자문방법은 현지방문, 서면자문(e-mail 포함) 등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는 자문대상 사업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업부서에 의견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공공건축가의 자문내용이 해당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방식) ①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주 1~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 사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일일(一日) 자문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근무내용과 사업자문 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5조(보수 등)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1. 총괄건축가 근무수당: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른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술사)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
- 2. 현지 자문수당: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른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특급기술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검토 수당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 가. 2시간 이내의 자문·검토수당: 10만원
 - 나. 2시간 초과외 자문·검토수당: 15만원
 - 다. 서면(e-mail 포함) 자문·검토수당: 10만원

② 민간전문가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행동윤리강령) 민간전문가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행동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려진 공공건축가와 공무원에게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이 훈령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응모신청서						접수 번호
응모분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성 명		생년월일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소 속		직 위				
성 별		활동지역				
주 소	집			연 락 처	직 장	
	직장				휴대폰	
				이메일		
학력사항 (학사/석사/박사 등)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공	학위	
	○○대학교	00.00.00	00.00.00	○○○	학사, 석사, 박사	
주요경력 (실무경력)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				00.00~00.00	
대표작품 /수상경력						
자격사항 (자격번호, 취득년도)	종류	등록번호	발급일자	비고		
	○○○		00.00.00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붙임 : 자기소개서 및 실적설명서 각 1부.						
본인은 위와 같이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모집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1. 응모자 인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성 명 : <input type="checkbox"/> 소속/직위 :
--

2. 주요실적(학위 논문을 제외한 대표 연구논문, 대표 작품(3건 이하) 등 총 5건 이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3. 주요 활동사항

구 분	기 간	활동 내용	비고(직책 등)
학회, 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00.00~00.00		
<input type="checkbox"/>	00.00~00.00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학위 논문 주제(해당 시 작성)

가. 석사논문

○ 제 목 :
○ 주 제 :

나. 박사논문

○ 제 목 :
○ 주 제 :

5. 참여 동기 등 자기소개서

○
20 . . .
신청인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소속, 연락처 등 제출자료의 개인정보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심사	총괄·공공건축가 임기만료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신청인 :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공공건축가 자문결과 보고서

사업명	담당부서	○○○과	○○○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 총사업비 : 백만원(국 , 도 , 시군) ▪ 사업규모 : 연면적 m², 지하 ○층 지상 ○층, 견폐율 %, 용적률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지 개요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경리항목 조정 		

진행단계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
회의일시/장소	20 . . () / 장소			
참석자	성명(소속)			
추진실적	진행된 내용, 현안, 주요이슈 등을 간략히 기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주요내용	자문 전		자문 후	
			민간전문가 주요 의견의 반영여부, 조치결과 관련 사항 기재	
자문시간	<input type="checkbox"/> 2시간 이내, <input type="checkbox"/> 2시간 초과, <input type="checkbox"/> 전일(8시간) 자문, <input type="checkbox"/> 서면자문(e-mail 포함) 중 택1			

상기 내용과 같이 회의내용을 확인함.
20 . . .

담당자	(서명)	공공건축가	(서명)
-----	------	-------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공공건축가 자문사업

사업명					
부서명	○○○과	○○○팀	관련부서	○○○과	○○○팀
팀장	○○○ 팀장		담당자	○○○ 주무관	
	연락처			연락처	

진행단계	구상·기획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	○	○	○	○	○
진행사항						

사업 개요

- 위 치 :
- 총사업비 : 백만원(국 , 도 , 시군)
- 사업규모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용적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지 개요 :
-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정리항목 조정

사업위치 사진 첨부

(뒷면)

○○○○ 사업				
연번	자문일시	공공건축가	자문내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7호서식】

총괄건축가 자문일지	
근 무 일	20 . . . ()
자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 시 간 : - 주요내용 : ○ OO사업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 시 간 : - 주요내용 :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일지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서명) </div>	

【별지 제8호서식】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행동윤리강령

- 제1조(사명)**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 제2조(기본윤리)** ①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③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3조(품위유지)**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이해관계 업무의 회피)**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이권개입의 금지)**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을 금지하며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한다.
- 제7조(성실의무)**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직무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 가능한 신속하게 사업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8조(비밀 유지 및 이용 금지)** ①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의사 교환 내용이나 관계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업무 내용을 사적 업무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영향력 행사 금지)**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강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전라북도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전라북도 고시 제2021-2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 734호선 고창 중산지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기정	지방도	734	대산~심 원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일원	15,52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2-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4-5	-	1.1
변경	지방도	734	대산~심 원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일원	25,09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2-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4-5	-	1.1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선형 불량구간 정비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6. 24. ~ 2022.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063-280-362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항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734	노선명	대산~심원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2-5도 ~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4-5 - 범 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3.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지 734	12	보조 간선 도로	3,025	중로3-705 대산면 매산리 305-8	소로1-지73 4C 대산면 중산리 1179	일반 도로	-	전라북도 고시 제2015-40호 (2015.3.13)	
변경	중로	3	지 734	12	보조 간선 도로	3,019	중로3-705 대산면 매산리 305-8	소로1-지73 4C 대산면 중산리 1179	일반 도로	-	전라북도 고시 제2015-40호 (2015.3.13)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지734	중로3-지734	군계획시설(도로) 선형변경 -연장 : 3,025m→3,019m -폭원 : 12m	도로선형 불량구간 정비를 위한 선형변경

4. 도로구역(변경) 및 접도구역(변경)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전라북도(도로교통과)에서 열람 가능

【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분	토지 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소유자	
	군/면/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소	성명
합 계				112,800	15,522	25,090	증)9,568		
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2-5	도	153	153	152	감)1		고창군
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2-3	전	723	0	57	증)57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칠거리로 ***	유***
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2-6	도	160	160	160	0		고창군
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1-5	도	766	766	743	감)23		고창군
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1-1	전	145	0	112	증)11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8	도	59	59	59	0	정주시 수성동 ***	김** 외 1인
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2	임	7,165	0	1,417	증)1,417	과천시 중앙동 ** 주공아파트 ****동 ***호	김** 외 1인
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18	임	80	0	80	증)80	광주 북구 중흥동 ****-	김** 외 1인
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21	임	108	0	45	증)45	정주시 수성동 ***	김** 외 1인
1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17	임	21	0	21	증)21		고창군
1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14	임	482	0	67	증)67	정주시 수성동 ***	김** 외 1인
1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3	임	686	0	112	증)112	광주 북구 중흥동 ****-	김** 외 1인
1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98-2	도	17	0	4	증)4		고창군
1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98-1	전	530	0	205	증)205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 ***동 ***호	강**
1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86-3	도	199	199	199	0		고창군
1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86-1	전	1,715	0	215	증)215	***	강***
1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00-1	전	9	0	9	증)9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공음대산로 ***	심**
1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85-1	임	407	0	152	증)152		기획재정부
1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85-2	도	311	0	3	증)3		기획재정부
2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8	임	185	0	62	증)6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구분	토지 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소유자	
	군/면/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소	성명
2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2	도	916	833	882	증)49		고창군
2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01	전	1,008	0	251	증)25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가 ***-**	이**
2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01-1	도	99	96	99	증)3		고창군
2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4	임	10	10	10	0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영***** **
2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02-1	도	56	54	56	증)2		고창군
2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02	대	215	0	91	증)9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2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7	도	123	123	123	0		고창군
2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1	임	4,547	0	1,203	증)1,203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영***** **
2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6	도	670	662	670	증)8		고창군
3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19-13	도	2,542	194	448	증)254		건설부
3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4-1	임	806	0	193	증)193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영***** **
3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4-3	도	50	50	50	0		고창군
3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10	도	45	44	44	0		고창군
3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3	임	1,688	0	250	증)250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목교길 *-*	변**
3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5	도	119	101	119	증)18		고창군
3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4	도	331	322	331	증)9	서울 은평구 갈현동 ***-*	이**
3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9	도	85	79	85	증)6		고창군
3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2	임	262	0	85	증)85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	김**
3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2	임	5,745	0	32	증)32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영***** **
4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8	도	45	43	45	증)2		기획재정부
4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5-1	전	14,517	0	279	증)27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구 외 2인

구분	토지 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소유자	
	군/면/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소	성명
4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5-4	도	365	0	358	증)358		고창군
4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9-2	도	499	462	499	증)37		고창군
4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5-6	임	1,219	0	30	증)30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영***** **
4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5-2	도	450	413	442	증)29		고창군
4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4-2	도	109	81	109	증)28		고창군
4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18	도	4	4	4	0		고창군
4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13	전	12,609	0	247	증)247	서울 노원구 중계동 ****-	박**
4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8-2	도	298	258	298	증)40		고창군
5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8-3	도	737	737	737	0		고창군
5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17	도	36	30	36	증)6		고창군
5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7-2	도	496	496	496	0		고창군
5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32-2	도	93	92	93	증)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공**
5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16	도	96	93	96	증)3	서울 중랑구 면목동 ****-	공**
5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12	전	889	0	215	증)215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	송**
5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9	전	874	0	422	증)422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 ****-	김**
5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8	전	430	0	37	증)37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	김** 외 2인
5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9-5	임	148	0	18	증)18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	김** 외 2인
5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9-4	도	827	774	827	증)53		고창군
6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15	도	345	345	345	0		고창군
6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6	전	1,906	0	550	증)550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	김** 외 2인
6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9-1	임	909	0	179	증)179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	김** 외 2인

구분	토지 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소유자	
	군/면/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소	성명
6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9-5	전	6,446	0	130	증)130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 ***	오** 외 1인
6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30-3	임	48	0	48	증)48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 ***	오** 외 1인
6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30-5	도	745	401	385	감)16		고창군
6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85-2	도	188	11	11			고창군
6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85-3	도	197	10	2	감)8		고창군
6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2-4	도	44	43	28	감)15		고창군
6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1-6	도	17	17	17			고창군
7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1-2	도	227	0	11	증)11		고창군
7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1-4	전	253	0	49	증)49		고창군
7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7	도	98	96	98	증)2	정주시 수성동 ***	김** 외 1인
7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9	도	244	235	209	감)26		고창군
7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11-4	도	93	93	58	감)35		고창군
7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98-5	도	902	902	798	감)104		고창군
7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98-3	도	40	13	40	증)27		고창군
7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98-4	전	1,018	0	56	증)5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 ***동 ***호	강**
7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87	전	1,343	0	314	증)314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길 **~*	김**
7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87-1	도	313	307	313	증)6		고창군
8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00-2	도	194	194	194	0		고창군
8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00	전	630	0	67	증)67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길 **~*	김**
8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10	임	59	0	4	증)4	서울 중랑구 면목동 ***~**	김**
8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9	도	993	993	770	감)223		고창군

구분	토지 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소유자	
	군/면/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소	성명
8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2-10	도	83	83	3	감)80		고창군
8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2-5	도	30	27	12	감)15		고창군
8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1-5	도	539	539	421	감)118		고창군
8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4-2	도	40	40	40	0		고창군
8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6-2	도	20	19	16	감)3		고창군
8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6-7	도	15	14	12	감)2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	현** 외 2인
9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6-8	도	53	53	29	감)24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	현** 외 2인
9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11	도	62	62	53	감)9		고창군
9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12	임	27	14	5	감)9		고창군
9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1	임	1,223	0	88	증)88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광대계룡길 ***	이**
9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563-7	도	255	252	247	감)5		고창군
9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9-3	도	490	490	490	0		고창군
9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8	임	1,488	0	84	증)8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9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19-1	전	1,384	0	118	증)11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9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5-5	도	147	147	136	감)11		고창군
9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4-3	도	365	365	365	0		고창군
10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4-1	전	660	0	111	증)111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목교길 **	김**
10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8-1	전	585	0	556	증)556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목교길 **	김**
10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29	전	860	0	19	증)19	고창군 땔산면 중산리 ***	박**
10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31	전	1,213	0	17	증)17	서울 은평구 갈현동 ***-*	이**
10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31-1	전	962	0	63	증)63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사거*길 **, *동 ***호	김**

구분	토지 소재지			지적면적 (㎡)	도로구역(㎡)			소유자	
	군/면/리	지번	지목		기정	변경	증감	주소	성명
10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31-2	도	218	218	218	0		고창군
10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6-3	도	438	438	438	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10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6-1	임	2,537	0	167	증)16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10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5-1	도	286	286	286	0		고창군
10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5	임	408	0	127	증)127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	이** 외 1인
11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4-6	도	17	17	17	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11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4-1	임	9,670	37	569	증)532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광***** ***
11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344-4	전	658	0	8	증)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11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5-6	전	759	0	178	증)178	고창군 대산면 산정리 *~**	나**
114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5-13	도	545	530	526	감)4		고창군
11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5-16	전	580	0	95	증)95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윤**
116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901-7	도	4	3	0	감)3		고창군
117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99-2	도	7	7	0	감)7		고창군
118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899-3	도	30	29	0	감)29		고창군
11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2-11	도	2	1	0	감)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120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2-9	도	37	36	0	감)36		고창군
121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6-3	도	30	26	0	감)26		고창군
122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616-6	도	16	16	0	감)16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664	현** 외 2인
123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산24-5	도	826	725	716	감)9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김**

전라북도 고시 제2021-215호

공사중단 건축물(무주군 관광호텔) 정비 선도사업계획 고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무주군 관광호텔) 정비 선도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 고 시 사 항

- ① 사 업 명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무주군 관광호텔) 정비 선도사업
- ② 사업기간 : 2021년 7월 ~ 2023년 12월
- ③ 기본방향 및 목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족한 노인 복지공간 등 생활SOC 공급
- ④ 정비방법 및 내용
 - 정비방법 결정 조서

위치	중단 시점	정비 방법	정비후 용도	사업기간	목표 연도	사업비 (억원)	비고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568 외 1필지	'99.12	취득후 리모델링(위탁)	주민공동 이용시설 (생활SOC시설)	'21. 7 ~'23. 12	'23	106.8	

⑤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주택건축과(☎063-280-4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시 제2021-218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1. 고시명 :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1	기념물	145	남원 청계리 고분군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8-7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생략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도정정보-행정정보-알림마당-공고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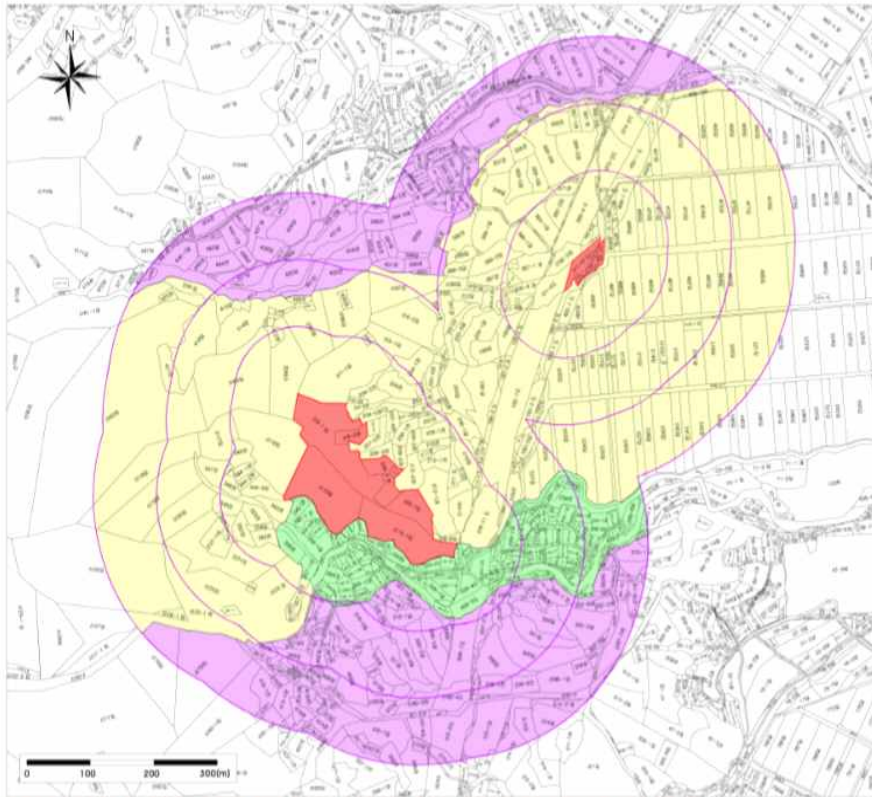
3.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전화 (063)280-3316

나. 남 원 시 문화예술과 전화 (063)620-6158

남원 청계리 고분군(기념물 제145호)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출반이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북쪽 위 방향도인 사용을 금합니다.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태양광발전시설·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빛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0호

택시 감차계획(4개 사업구역)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개 사업구역(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임실군)에서 수립한 택시감차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라북도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일

전라북도지사

1.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단위 : 대)

구 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정읍시	계	48		7		2		8		29		2		135	
	법인	34	14	-	7	-	2	3	5	29	-	2	-	미정	
김제시	계	49		3		12		5		10		19		12	
	법인	35	14	1	2	10	2	4	1	1	9	19	-	10	2
무주군	계	12		-		2		3		2		5		12	
	법인	2	10	-	-	-	2	-	3	-	2	2	3	4	8
임실군	계	11		2		4		3		-		2		13	
	법인	4	7	1	1	1	3	-	3	-	-	2	-	미정	

2. '21년도 감차 계획

(단위 : 대)

구분	보유대수 (용역기준)	제4차 총량 용역 결과		2021년 감차계획		
		목표대수	과잉대수	계	법인	개인
계	1,078	732	346	28	25	3
정읍시	587	413	174	2	2	-
김제시	368	264	104	19	19	-
무주군	69	17	52	5	2	3
임실군	54	38	16	2	2	-

3. 감차 보상금의 수준

(단위 : 대, 천원)

시군	업종별	감차대수	총소요액	감차보상금액 (1대당)			
				계	국비	시군비	인센티브
정읍시	법인	2	63,000	31,500	3,900	17,600	10,000
	개인	-	-	-	-	-	-
김제시	법인	19	570,000	30,000	3,900	16,100	10,000
	개인	-	-	-	-	-	-
무주군	법인	2	50,000	25,000	3,900	11,100	10,000
	개인	3	180,000	60,000	3,900	41,100	15,000
임실군	법인	2	46,000	23,000	3,900	9,100	10,000
	개인	-	-	-	-	-	-

4. 연도별 소요금액 및 감차재원

(단위 : 대, 천원)

시군	구 분		감차대수	감차보상금액 (1대당)	감차예산액	감차보상 인센티브액
	연도별	업종별				
정읍시	2020	법인	29	31,500	623,500	290,000
		개인	-	-	-	-
	2021	법인	2	31,500	43,000	20,000
		개인	-	-	-	-
김제시	2020	법인	1	26,950	16,950	10,000
		개인	9	59,900	404,100	135,000
	2021	법인	19	30,000	380,000	190,000
		개인	-	-	-	-
무주군	2020	법인	0	-	-	-
		개인	2	50,000	70,000	30,000
	2021	법인	2	25,000	30,000	20,000
		개인	3	60,000	135,000	45,000
임실군	2020	법인	-	-	-	-
		개인	-	-	-	-
	2021	법인	2	23,000	26,000	20,000
		개인	-	-	-	-

5. 감차계획 시행기간

시군별	시행기간	비고
정읍시	2021년 ~ 2030년(10년)	
김제시	2021년 ~ 2025년(5년)	
무주군	2021년 ~ 2025년(5년)	
임실군	2021년 ~ 2025년(5년)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2호

장계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

장수군수가 시행하는 장계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 공 고 사 항

- ① 사업의 명칭 : 장계 대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수도사업자) : 장수군수
 - 주 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③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장수군 장계면 일대에 원활한 용수공급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 개요
 - 목표연도 : 2025년
 - 시설용량 : Q=1,000m³(신설)
 - 송·배수관로 : L=248.6m(D150~D200mm)
 - 공사기간 : 2021. 8월 ~ 2022. 8월
 - 사업비 : 1,828백만원(균특이양 1,280백만원, 균비 548백만원)
- ④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산 70-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A=4,845m²

- ⑤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장수군 장계면 일원
 - 급수인구 : 4,598인
 - 급 수 량 : 일최대 460m³, 일평균 340m³

- ⑥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기간 : 2021. 8월 ~ 2022. 8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22. 9월

⑦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 등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비 고
계	5	34,547	4,845	
국·공유지	2	1,407	629	
사유지	3	33,140	4,216	

⑧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이해관계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1	장계면 무농리	산70-1	임	32,531	3,993	안음서문씨 장수서문 민파종친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3-81					
2	장계면 무농리	산70-14	수	494	162	서문존권 외 1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212-1					
3	장계면 무농리	646-3	수	539	129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4	장계면 무농리	645-1	수	868	500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5	장계면 무농리	산70-15	수	115	61	서문민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계		3필지		34,547	4,845							

⑨ 군 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

○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수 도 공급설비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산70-1번지 일원	-	증4845	4845	금회	

○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1	수 도 공급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지 신설 ◦ 위치 : 장계면 무농리 산70-1번지 일원 ◦ 면적 : 4,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군 장계 대곡지구 일원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생활환경을 향상하고자 신규 배수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go.kr>에 게재

⑪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도서는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담당자 : 김가현 ☎ 063-350-2891)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5호

산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저수지 준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산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1. 사업명 : 산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2. 위치 : 산정지구 저수지 준설사업
3. 사업목적 :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의 준설 등을 통해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을 구축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전영농을 도모하고자 함.
4. 수혜면적 : 수혜면적 71ha
5. 사업개요
 - 가. 저수지 준설
 - 저수지 준설 6,186m³
 - 나. 부대공 : 수륙양용 준설선 운반, 조립 및 해체, 배사관운반 및 조립해체
6. 사업기간 : 2021. 06 ~ 2021. 12. 30
7. 총사업비 : 140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전화063-560-1552)

전라북도 고시 제2021-226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사항을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 고 시 내 용

① 보호수 지정해제 내용

지정 번호	소재지	수종	분수	수령 (년)	수고 (m)	흉고 둘레 (cm)	소유자	비고
9-9-29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390-5	소나무	1	200	8	200	장수군수	

② 지정해제사유 : 수목 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 상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8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업 체 명	업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유)가람이엔탑	수질	한종희	제171호	군산시 조촌4길 25, 4층(조촌동)	만남('21.05.13.)
유한회사 일토씨엔엠	대기	최규연	제192호	군산시 조촌4길 24-4, 3층(조촌동)	등록('21.06.17.)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95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 898호선
도로공사의 종류	도로선형개선 L=100.0m, B=8.0~14.2m(생태터널 L=50m, B=14.2m)		
도로공사 구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 165 ~ 산38-1 일원		
도로공사 시행장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 165 ~ 산38-1 일원		
도로공사 착공 예정일	2021. 7.	도로공사 준공 예정일	2022. 12. 31
도로공사 목적 및 사유	단절된 영산기맥 생태계 연결·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및 증진에 기여하고, 지방도898호선 도로 선형개량으로 교통환경을 개선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96호

건설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알림 공문 송달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 공고사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기간
㈜봉황건설	건축공사업 (10-2167)	전라북도 익산시 오사면 군악로 406,3층 301호	○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 실효) 미달 - 실효일자 : 2020.05.19 - 실효사유 :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 3년 이내에 제재처분 : 없음	영업정지	2021.7.1. ~ 2021.11.30
㈜봉황건설	건축공사업 (10-2167)	전라북도 익산시 오사면 군악로 406,3층 301호	○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영업정지	2021.12.1. ~ 2022.4.30.

-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에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https://ecfs.scourt.go.kr>)으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수료 감경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위임사무 : 전라북도지사)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97호

건설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알림 공문 송달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 공고사항

업체명 (대표자)	해당업종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 내용	처분기간
㈜다원토건	건축공사업 (05-06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7, 5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등록기준(2018년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후 미달 사항 미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자료 제출 : 2020.3.2.까지 ⇒ “미제출” - 원인 :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건설업등록기준 심사 결과 : “부적정” 통보 - 미보완 자료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록말소	

1. 귀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CIS)에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위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https://ecfs.scourt.go.kr>)으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수료 감경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위임사무 : 전라북도지사)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건설공사가 완성할 때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1-1198호

비영리사단법인 신규등록 공고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1년 7월 2일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정읍신태인축구센터
2. 대표자 : 이문희
3. 주된 사무소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56(신태인스포츠선수촌)
4. 주된 사업
 - 유소년 및 청소년 선수 육성
 - 유·청소년(U-12,15,18) 축구대회 참가 및 주최, 주관
 - 학교 연계형 전문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 축구와 관련한 각국 축구클럽과의 친선 및 교류 경기
 - 축구 지도자 양성
 - 방과 후 축구교실 운영
 - 유학선수 발굴 육성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일체
5. 허가연월일 : 2021. 6. 28.
6. 허가구분 : “신규”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0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 - 67호
2. 단체명칭 : 바르게살기운동 군산시협의회
3.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구영2길 43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김 석 구
 - 생 년 월 일 : 1944.01.30.
 - 주 소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16-14
5. 주된 사업
 - 바르게살기운동, 시민계도활동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고 기 연 (1947.12.12.)	김 석 구 (1944.01.30.)	

7. 허가(변경)일자 : 2021. 6.30.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08호

주민조례 개정 청구명세사항 공표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주민청구가 있어 「전라북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40조(청구 명세사항 공표 및 보고)의 규정에 따라 청구명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 7. 2.

전라북도지사

1. 청구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이대중 외 8명
- 주 소 : 전북 고창군 성내면 만각동길 18-1

2. 청구 취지 및 이유

- 현재 대농과 기업농, 개방농정에서 중,소농은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도, 농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농민 소득 중 농업 수익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민이 경제적 문제로 농촌, 농어업에서 이탈하고 있음
- 농어업, 농촌이 희생하려면 간접예산이 아니라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젊은층이 농어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보조금액도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상향 지급 되어야 함
- 농어촌에 만연한 남녀 불평등 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모든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력 또한 남성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급
- 기후위기 시대, 시장과 자본 중심의 농업 현실에선 친환경 농업이 어렵고, 생태농업의 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해야 함

3. 연서 주민수 현황

-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18,290명
- ※ 필요 연서 주민수 : 15,215명('20년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

4.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1. 7. 1 ~ '21. 7. 14./10일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열람장소 : 전라북도청 및 14개 시·군 민원실

○ 이의신청 방법

- 신청자 : 청구인 명부상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기간 :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10일간)

- 신청처 :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또는 시·군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각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처에 제출

5. 기타 행정사항

○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신청서 사본을 팩스(063-280-2609)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농산유통과로 접수한 당일에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공표)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농민소득안정팀**(담당자 김용우 : ☎ 063-280-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5. 9. 4>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 개정 및 폐쇄 청구의 청구인명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전라북도지사 귀하</p>			
※ 첨부 : 증빙자료			

군산시 고시 제2021-9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2일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60	9	보조 간선 도로	4,699	옥구읍 수산리 1143도	옥구읍 선제리 513-5도	일반 도로		군산고-94 (*09.11.20)	군도1호선
변경	소로	2	960	9	보조 간선 도로	4,699	옥구읍 수산리 1143도	옥구읍 선제리 513-5도	일반 도로		군산고-94 (*09.11.20)	군도1호선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960 호선	소로 2-960 호선	일부구간 선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도1호선 도로구역에 맞추어 개설된 도로 기준으로 선형을 변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9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164호(2016.12.30.)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건설기계성능시험장)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7월 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2단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가. 2단계 사업부지 면적(준공 2-1단계)
 - 1) 면적 : 176,895.9㎡(2-1단계 : 154,109.9㎡ / 2-2단계 : 22,786㎡)
 - 2) 규모 : 176,895.9㎡(연구시설 : 109,801㎡ / 기반시설 : 9,943㎡ / 녹지 : 57,151.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산업혁신과)
 - 나.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2-1단계 : 2016. 12. 30. ~ 2020. 3. 31.(준공)
 - 나. 2-2단계 : 2016. 12. 30. ~ 2021. 6. 30.(변경 2023. 6. 30.)
6.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붙임참고)

가. 2-1단계(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포면 나포리	851	잡	154,109.9	154,109.9	군산시				
계					154,109.9					

나. 2-2단계(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	729-4	구	3,394	408	군산시				
2	“	312-5	전	2,483	2,483	군산시			2019.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3	“	산16-6	임	7,934	5,713	군산시				
4	“	산18	임	13,003	13,003	군산시				
5	“	산18-1	임	683	683	군산시			2019.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6	“	산253	구	496	496	군산시	-			
계					22,786					

익산시 공고 제2021-1730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7월 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인화동2가 18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익산 센트럴캐슬 오피스텔 진입도로 개설사업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중로2류 20호 : L = 135m, B = 15m, A = 2,110m²
 - 소로1류811호 : L = 277m, B = 9.2~12m, A = 2,986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리츠웰임대주택협동조합
 - 주 소 : 전북 익산시 중앙로 60(갈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12.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계도서 : "계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59,538	5,096				
1	인화동2가	184-1	구	3,725	1,628	한국농어촌공사			
2	인화동2가	181	답	2,235	21	김기학	서울 송파구 가락동 21-6 가락2차쌍용@ 104-1703		
3	인화동2가	180	답	1,574	78	김선홍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2 신성@105동 1403호		
4	인화동2가	235	구	3,176	1,280	한국농어촌공사			
5	인화동2가	239	답	1,778	93	맹한영외2인	전북 익산시 왕궁면 탐리길 65		
6	인화동2가	238	답	1,866	31	맹한영외2인	전북 익산시 왕궁면 탐리길 65		
7	인화동2가	237	답	898	25	맹한영외2인	전북 익산시 왕궁면 탐리길 65		
8	인화동2가	231	답	3	3	주식회사동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기계진흥회관 신관7층		
9	인화동2가	232-1	도	136	136	김영순	영등동 260-30		
10	인화동2가	233	도	33	33	김영순	영등동 260-30		
11	인화동2가	234	답	179	102	김영순	영등동 260-30		
12	인화동2가	232	철	60	60	국(국토교통부)			
13	인화동2가	230	철	60	60	국(국토교통부)			
14	인화동2가	174-1	철	37,990	679	국(국토교통부)			
15	동산동	813-10	답	195	32	국(기획재정부)			
16	동산동	813-44	철	43	41	국(국토교통부)			
17	동산동	590-16	철	5,586	793	국(국토교통부)			
18	동산동	609-35	도	1	1	익산시			

정읍시 공고 제2021-1020호

정읍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정읍시 상동1차 영무예다음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정 읍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ㄱ (당초) 정읍시 상동 산34-2번지 외 33필지
 - ㄴ (변경) 정읍시 상동 산34-2번지 외 3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상동1차 영무예다음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3. 사업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당초) 4,444㎡ , (변경) 4,458.1㎡
 - 사업규모(4개노선)
 - 중로2-6 : L=55m, B=13~14m • 소로1-30 : L=100m, B=8~10m
 - 소로2-435 : L=205m, B=9m • 소로3-183 : L=140m, B=6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구동)
 - 성 명 : (주)와이엠개발
5. 사업시행기간
 - ㄱ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년 04월 30일
 - ㄴ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년 06월 05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별도붙임”
7. 열람장소 : 정읍시 도시재생과(☎063-539-5782)
8. 열람기간 : 도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도보게재일 2021. 7. 2.)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10. 의견서 제출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내에 우편 또는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정읍	상	산34-2	산34-2	임	751.0	524.0	221.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산34-5			221.0		221.0						
2	정읍	상	산34-4	48-9	임	687.0	566.0	169.0	-		국(건설교통부)				
				48-14			184.0		184.0						
3	정읍	상	산35-1	산35-1	임	5,681.0	5,606.0	75.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산35-13			75.0		75.0						
4	정읍	상	산35-6	산35-6	임	2,025.0	1,985.0	35.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산35-14			10.0		10.0						
				산35-15			30.0		30.0						
5	정읍	상	산35-9	48-12	임	136.0	149.0	4.0	-		국(건설교통부)				
				48-18			3.0		3.0						
6	정읍	상	산35-10	48-13	임	324.0	353.0	14.0	-		국(건설교통부)				
				48-19			15.0		15.0						
7	정읍	상	산35-11	48-10	임	73.0	45.00	28.0	-		국(건설교통부)				
				48-15			28.0		28.0						
8	정읍	상	산35-12	48-11	임	201.0	57.0	131.0	-		국(건설교통부)				
				48-16			158.0		158.0						
9	정읍	상	산40-2	산40-2	임	2,591.0	2,184.0	231.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산40-3			241.0		241.0						
10	정읍	상	산41-4	산41-4	임	2,661.0	992.0	913.0	-		국(기획재정부)				
				산41-5			897.0		897.0						
11	정읍	상	46-5	46-5	대	225.0	106.0	118.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46-15			119.0		119.0						
12	정읍	상	46-11	46-11	답	4.0	4.0	3.0	3.0		정읍시				
13	정읍	상	46-14	46-14	답	155.0	155.0	155.0	155.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30, 에이301호	농업회사법인주 식회사나투라				
14	정읍	상	47-3	47-3	전	1,134.0	339.0	380.0	-		국(기획재정부)				
				47-8			376.0		376.0						
15	정읍	상	48-6	48-6	임	434.0	333.0	95.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48-7			98.0		98.0						
16	정읍	상	49	49	답	848.0	832.0	14.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49-11			16.0		16.0						
17	정읍	상	49-1	49-1	전	1,745.0	1,720.0	33.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49-12			25.0		25.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8	정읍	상	49-2	49-2	전	405.0	374.0	24.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49-13	31.0			31.0								
19	정읍	상	49-3	49-3	전	278.0	228.0	48.0	-		국(기획재정부)				
			49-14	48.0			48.0								
20	정읍	상	49-9	49-9	임	666.0	605.0	62.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49-16	61.0			61.0								
21	정읍	상	56	56	도	3,688.0	3,688.0	1,368.0	1,368.0		정읍시				
22	정읍	상	56-2	56-2	도	54.0	39.0	20.0	-		정읍시				
			56-5	15.0			15.0								
23	정읍	상	56-3	56-3	도	38.0	21.0	20.0	-		정읍시				
			56-6	17.0			17.0								
24	정읍	상	56-4	56-4	답	16.0	8.0	7.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56-7	8.0			8.0								
25	정읍	상	58-9	58-9	전	330.0	302.0	28.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58-15	28.0			28.0								
26	정읍	상	58-10	58-10	대	416.0	368.0	47.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58-16	48.0			48.0								
27	정읍	상	58-14	58-14	전	12.0	7.0	5.0	-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주식회사 와이엠개발				
			58-17	5.0			5.0								
28	정읍	상	89-3	89-3	답	281.0	214.0	42.0	-		국(국토교통부)				
			89-26	41.0			41.0								
29	정읍	상	716	716	도	877.0	199.0	12.0	-		국(건설부)				
			716-1	12.0			12.0								
30	정읍	상	717-3	717-3	구	77.0	24.0	18.0	-		국 (농림축산식품부)				
			717-5	36.0			36.0								
31	정읍	상	969	969	도	19,378.8	19,378.8	31.0	31.0		정읍시				
32	정읍	상	971	971	도	2,696.8	2,696.8	40.0	20.0		정읍시				
33	정읍	상	973	973	도	16.1	16.1	16.0	16.1		국(건설교통부)				
34	정읍	상	무지번	717	구	221.0	202.0	37.0	-		국 (농림축산식품부)				
			717-4	19.0			19.0								
총계			34필지	35필지		49,125.7		4,444.0	4,458.1 (증14.1)						

정읍시 공고 제2021-1022호

정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정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정 읍 시 장
2021년 7월 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상평동 2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사업

나. 명칭 :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등 건립사업

3. 사업의 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137,579㎡

나. 사업시행규모 : 운동시설(건축면적 5,300.45㎡, 연면적 7,139.4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읍시장(시설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정읍시 충정로 234(수성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익일

나. 준공예정일 : 2022. 12. 31.

6. 열람장소 : 정읍시청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063-539-5782)

7.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도보게재일 : 2021. 07. 02.)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관리자 조서 : "따로붙임"

9. 관계도서 : "실음생략"

10. 의견서 제출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구역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본번	부번								
합 계					159,396	137,579					
1	상평동	56	2	체	27,384	27,384	정읍시	-			
2	"	56	14	체	1,543	614	정읍시	-			
3	"	56	17	체	383	209	정읍시	-			
4	"	56	19	체	777	777	정읍시	-			
5	"	56	23	체	906	906	정읍시	-			
6	"	56	35	체	1,159	1,159	정읍시	-			
7	"	56	71	체	942	940	정읍시	-			
8	"	57	1	체	486	369	정읍시	-			
9	"	59	1	체	97	68	김진하	상평동 17			
10	"	59	2	체	13	13	김진하	상평동 17			
11	"	59	3	체	303	303	정읍시	-			
12	"	61	2	체	400	400	정읍시	-			
13	"	62	1	체	40	40	정읍시	-			
14	"	62	2	체	143	40	정읍시	-			
15	"	62	3	체	7,591	7,400	정읍시	-			
16	"	63	1	체	739	161	정읍시	-			
17	"	203		체	710	685	정읍시	-			
18	"	203	1	체	53	44	김진술	상평동 99			
19	"	203	2	체	79	79	김진술	상평동 99			
20	"	206	1	체	43	43	건설교통부	-			
21	"	210	1	체	2,701	2,701	정읍시	-			
22	"	211	2	체	411	100	정읍시	-			
23	"	249	1	체	20	18	김용술	사정			
24	"	249	5	체	42	31	정읍시	-			
25	"	257	1	체	1,137	1,137	정읍시	-			
26	"	257	31	체	1,160	1,160	정읍시	-			
27	"	257	34	체	1,220	1,220	정읍시	-			
28	"	257	37	체	78	78	정읍시	-			
29	"	257	39	체	74	13	신성규	하모리			
30	"	257	40	임	706	607	박명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1(금암동)	정읍시연지동 341-9	정읍시 연지동 341-9	근저당권/지상권
									이길수	정읍시 충정로 163(장명동)	근저당권
31	"	257	41	도	151	145	박명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1(금암동)	정읍시연지동 341-9	정읍시 연지동 341-9	근저당권
									이길수	정읍시 장명동 146	근저당권
32	"	257	42	임	198	198	박명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2	정읍시연지동 341-9	정읍시 연지동 341-9	근저당권/지상권
									이길수	정읍시 충정로 163(장명동)	근저당권
33	"	258		체	66	66	정읍시	-			
34	"	259		체	1,405	1,405	정읍시	-			
35	"	260		체	931	931	정읍시	-			
36	"	261		체	3,273	3,273	정읍시	-			
37	"	262	1	체	1,686	1,686	정읍시	-			
38	"	262	2	체	377	377	정읍시	-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행정구역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본번	부번								
39	상평동	263		채	719	719	정읍시	-			
40	"	264		채	743	743	정읍시	-			
41	"	267	1	채	1,850	1,850	정읍시	-			
42	"	268	1	채	104	104	정읍시	-			
43	"	269		채	744	744	정읍시	-			
44	"	270		채	2,836	2,836	정읍시	-			
45	"	271		채	1,098	1,098	정읍시	-			
46	"	272	1	채	4,528	4,528	정읍시	-			
47	"	272	2	채	3,359	3,359	정읍시	-			
48	"	272	3	채	920	920	정읍시	-			
49	"	273		채	7,612	7,612	정읍시	-			
50	"	274		채	22,846	22,846	정읍시	-			
51	"	276	3	채	1,567	1,567	정읍시	-			
52	"	276	4	채	489	489	정읍시	-			
53	"	277	2	채	565	565	정읍시	-			
54	"	277	3	채	2,649	2,649	정읍시	-			
55	"	277	4	채	2,572	2,572	정읍시	-			
56	"	277	6	채	2,786	2,786	정읍시	-			
57	"	277	9	채	333	333	정읍시	-			
58	"	277	10	채	349	349	정읍시	-			
59	"	277	11	채	6,276	6,276	정읍시	-			
60	"	277	12	채	288	288	정읍시	-			
61	"	278	1	채	1,455	1,455	정읍시	-			
62	"	279	13	채	29	29	정읍시	-			
63	"	902		구	3,188	413	농수산부	-			
64	"	916	6	채	92	92	정읍시	-			
65	"	916	10	채	175	68	건설교통부	-			
66	"	916	17	채	23	18	건설교통부	-			
67	"	916	18	채	162	20	건설교통부	-			
68	"	916	20	채	65	46	정읍시	-			
69	"	927	2	채	51	51	농수산부	-			
70	"	928	4	채	26	26	농수산부	-			
71	"	928	5	채	7	7	농수산부	-			
72	"	산15	7	임	1,587	534	정읍시	-			
73	"	산17		임	4,059	2,514	정읍시	-			
74	"	산19	6	임	23,713	10,189	정읍시	-			
75	"	산19	7	임	37	37	정읍시	-			
76	"	산19	8	임	67	67	정읍시	-			

김제시 고시 제2021-7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김제시 요촌동 서주주택 아파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김제시 건축과(063-540-3357)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7월 2일
김 제 시 장

1. 사업명 : 김제시 요촌동 서주주택 아파트 (민간 임대분양)
2. 사업주체
 - 가. 성명 : 주식회사 서주주택개발 대표 박승만
 - 나.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7-1, 상가동 지하 101호
3. 사업개요
 - 가. 대지위치 : 김제시 요촌동 307-6번지 외 3필지
 - 나. 대지면적 : 9,029㎡
 - 다. 건축면적 : 1,641.0986㎡
 - 라. 연 면 적 : 23,021.6941㎡
 - 마. 건축규모 : 147세대 (주2개동/최고21층, 부5개동/최고1층)
 - 바. 사업비 : 30,426,000천원
 - 사. 사업기간 : 2021. 08. ~ 2023. 12.
4. 토지조서 및 설계도서 : 승인 설계도서와 같음
5.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그 외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른 협의 의제처리 사항

김제시 공고 제2021-564호

김제 도시계획시설(검산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김제 도시계획시설(검산공원)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1년 7월 2일

1.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공원) 결정(변경): “**변경**”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고시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검산 공원	검산 체육 공원	체육 공원	검산동 일원	504,181	증)2,805	506,986	전북고시 제287호 (92. 11. 1)	-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2	검산 공원	검산 체육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기정 504,181m² → 변경 506,986m² (증 2,805m²) · 명칭 변경 - 기정 검산공원 → 변경 검산체육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공원 내 조성중인 시설에 대해 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원시설 구역 변경함 · 근린공원(검산공원)과의 공원명 중복으로 변경

나. 검산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조서

시설명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비고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13,029	감)106,043	506,986	13,034.06	감)140.40	12,893.66	21,934.73	감)140.40	21,794.33	시설률: 55.44% 건폐율: 2.54%
공원시설	299,599	감)18,509	281,090	13,034.06	감)140.40	12,893.66	21,934.73	감)140.40	21,794.33	
교통시설	47,471	감)3,303	44,168	-	-	-	-	-	-	
조경시설	20,122	증)1,462	21,584	-	-	-	-	-	-	
유희시설	4,914	-	4,914	-	-	-	-	-	-	
운동시설	198,805	감)6,545	192,260	10,828.10	-	10,828.10	17,595.99	-	17,595.99	
교양시설	13,797	감)1,462	12,335	1,690.94	-	1,690.94	3,727.72	-	3,727.72	
편익시설	14,490	감)8,661	5,829	515.02	감)140.40	374.62	611.02	감)140.40	470.62	
기타시설	313,430	감)87,534	225,896	-	-	-	-	-	-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13,029	감)106,043	506,986	13,034.06	감)140.40	12,893.66	21,934.73	감)140.40	21,794.33	-
시설소계			299,599	감)18,509	281,090	13,034.06	감)140.40	12,893.66	21,934.73	감)140.40	21,794.33	-
교통 시설	소 계		47,471	감)3,303	44,168	-	-	-	-	-	-	8.71%
	1-1	입구광장	3,916	-	3,916	-	-	-	-	-	-	-
	1-2	휴게광장	-	-	-	-	-	-	-	-	-	-
	-	도 로	43,555	감)3,303	40,252	-	-	-	-	-	-	-
조경 시설	소 계		20,122	증)1,462	21,584	-	-	-	-	-	-	4.26%
	2-1	상징황소탑	453	-	453	-	-	-	-	-	-	-
	2-2	무궁화동산	3,187	-	3,187	-	-	-	-	-	-	-
	2-3	파 고 라	-	-	-	-	-	-	-	-	-	-
	2-4	잔 디 발	10,439	-	10,439	-	-	-	-	-	-	-
	2-5	환경조형물	20	-	20	-	-	-	-	-	-	-
	2-6	테 크 1	1,871	-	1,871	-	-	-	-	-	-	-
	2-7	테 크 2	1,086	-	1,086	-	-	-	-	-	-	-
	2-8	테 크 3	364	-	364	-	-	-	-	-	-	-
	2-9	테 크 4	95	-	95	-	-	-	-	-	-	-
	2-10	숲속쉼터	2,607	-	2,607	-	-	-	-	-	-	-
	2-11	힐링가든	-	증)1,462	1,462	-	-	-	-	-	-	-
유희 시설	소 계		4,914	-	4,914	-	-	-	-	-	-	0.97%
	3-1	어린이놀이터	2,620	-	2,620	-	-	-	-	-	-	-
	3-2	발물놀이터	875	-	875	-	-	-	-	-	-	-
	3-3	모험놀이터	1,419	-	1,419	-	-	-	-	-	-	-
운동 시설	소 계		198,805	감)6,545	192,260	10,828.10	-	10,828.10	17,595.99	-	17,595.99	37.92%
	4-1	육상경기장	52,781	-	52,781	1,566.08	-	1,566.08	2,084.75	-	2,084.75	-
	4-2	축 구 장	22,126	-	22,126	-	-	-	-	-	-	-
	4-3	실내체육관	15,409	-	15,409	3,317.48	-	3,317.48	4,969.08	-	4,969.08	-
	4-4	농구장	-	-	-	-	-	-	-	-	-	-
	4-5	테니스장	7,128	-	7,128	219.05	-	219.05	219.05	-	219.05	-
	4-6	기초체력단련장	-	-	-	-	-	-	-	-	-	-
	4-8	축 구 장	5,158	-	5,158	-	-	-	-	-	-	-
	4-9	국 민 체육센터	4,612	-	4,612	1,161.00	-	1,161.00	3,483.00	-	3,483.00	3층
	4-10	국민체육 복합센터	13,011	-	13,011	2,350.33	-	2,350.33	4,394.77	-	4,394.77	2층
	4-11	다 목 적 운 동 장	6,446	감)4,230	2,216	120.00	-	120.00	120.00	-	120.00	-
	4-13	풋살경기장	3,363	-	3,363	-	-	-	-	-	-	-
	4-14	궁 도 장	28,979	감)2,240	26,739	625.81	-	625.81	486.00	-	486.00	-
	4-15	야 구 장	27,414	감)75	27,339	615.20	-	615.20	615.20	-	615.20	-
	4-16	하키장	12,378	-	12,378	853.15	-	853.15	1,224.14	-	1,224.14	-
	교양 시설	소 계		13,797	감)1,462	12,335	1,690.94	-	1,690.94	3,727.72	-	3,727.72
5-1		야외극장1	1,462	감)1,462	-	-	-	-	-	-	-	-
5-2		청소년 수련관	12,035	-	12,035	1,390.94	-	1,390.94	3,427.72	-	3,427.72	-
	5-3	야외극장2	300	-	300	300.00	-	300.00	300.00	-	300.00	-
편익 시설	소 계		14,490	감)8,661	5,829	515.02	감)140.40	374.62	611.02	감)140.40	470.62	1.15%
	6-1	화 장 실	-	-	-	381.40	감)140.40	241.00	381.40	감)140.40	241.00	3개소
	6-2	탈의실 및 샤 워 실	96	-	96	133.62	-	133.62	229.62	-	229.62	2개소
	6-3	주 차 장	14,394	감)8,661	5,733	-	-	-	-	-	-	-
기타 시설	소 계		313,430	감)87,534	225,896	-	-	-	-	-	-	44.56%
	녹 지		240,716	감)85,772	154,944	-	-	-	-	-	-	-
	호 수		72,714	감)1,762	70,952	-	-	-	-	-	-	-

3)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②	검산공원	·공원시설 (교통,조경,유희,운동,교양,편익) 기정: 299,599㎡ 변경: 281,090㎡ 감)18,503㎡ ·기타시설 (녹지,호수) 기정: 313,430㎡ 변경: 225,896㎡ 감)87,534㎡	·체육공원 내 조성중인 시설에 대해 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원시설 구역을 변경함 ·김제시 고시 제2020-129호로 실효고시된 검산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가로망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가로망 결정(변경) 총괄조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0	6,966	43,555	4	675	7,620	1	369	5,535	25	5,922	30,400
	변경	29	6,712	40,252	4	684	7,772	1	369	5,535	24	5,659	26,945
대로	기정	1	364	9,100	-	-	-	-	-	-	1	364	9,100
	변경	1	244	6,019	-	-	-	-	-	-	1	244	6,019
중로	기정	4	1,254	16,677	1	174	2,610	1	369	5,535	2	711	8,532
	변경	4	1,254	16,694	1	174	2,610	1	369	5,535	2	711	8,549
소로	기정	25	5,348	17,778	3	501	5,010	-	-	-	22	4,847	12,768
	변경	24	5,214	17,539	3	510	5,162	-	-	-	21	4,704	12,377

2) 가로망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중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합 계				-	6,966	43,555	-	-	-	-
변경					-	6,712	40,252	-	-	-	
기정	대 로				-	364	9,100	-	-	-	-
변경					-	244	6,019	-	-	-	
기정	대로	3	1	25	진입도로	364	9,100	대로1-7 유희도로	소 광 장	일반도로	-
변경	대로	3	1	25	진입도로	244	6,019	대로1-7 유희도로	소 광 장	일반도로	-
기정	중 로				-	1,254	16,677	-	-	-	-
변경					-	1,254	16,694	-	-	-	
기정	중로	1	1	15	진입도로	174	2,610	입구광장	중로3-1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진입도로	369	5,535	입구광장	대로3-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	12	연결도로	361	4,332	중로1-2	대로3-1	일반도로	-
변경	중로	3	1	12	연결도로	361	4,349	중로1-2	대로3-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2	12	진입도로	350	4,200	입구광장	대로3-1	일반도로	-
기정	소 로				-	5,348	17,778	-	-	-	-
변경	소 로				-	5,214	17,539	-	-	-	-
기정	소로	1	1	10	연결도로	330	3,300	소로1-1	소광장	일반도로	-
변경	소로	1	1	10	연결도로	160	1,607	소로1-1	소광장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	연결도로	125	1,250	소로1-1	대로3-1	일반도로	-
변경	소로	1	2	10	연결도로	304	3,095	소로1-1	대로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연결도로	46	460	중로3-2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5	산책로	169	841	육상경기장	소로3-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2	2.5	산책로	302	754	소로3-1	소로3-2종점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3	2.5	산책로	70	175	소로3-2	수변테크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4	2.5	산책로	61	152	공원진입로(남서쪽)	소로3-5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5	2.5	산책로	412	1,029	수변테크	소로3-9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6	2.5	산책로	285	712	소로3-5	소로3-5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7	2.5	산책로	76	190	소로3-6	소로3-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8	2.5	산책로	135	336	수변테크	소로3-5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9	2.5	산책로	565	1,203	소로3-5	소로3-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0	2.5	산책로	224	560	소로3-9	소로3-9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1	2.5	산책로	120	300	공원진입로(동쪽)	소로3-9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2	2.5	산책로	309	773	소로3-9	소로3-1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3	2.5	산책로	66	164	야구장주차장	소로3-20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4	2.5	산책로	307	768	소로3-10	소로3-14종점	보행자전용도로	-
변경	소로	3	14	2.5	산책로	299	733	소로3-10	소로3-14종점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5	6	연결도로	286	1,453	수영장	산63-2입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6	1.7	산책로	523	1,075	무궁화광장	소로3-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7	2	산책로	186	605	중로 2-1	소로3-18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8	2~3	산책로	171	441	국민체육센터	산63-1입	보행자전용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9	3	산책로	138	400	중로2-1	소로3-2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20	1.5	산책로	172	269	소로 3-19	소로3-2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21	2	산책로	135	212	소로 3-18	테크 2-7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22	2.5	산책로	135	356	소로3-14	야구장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
폐지	소로	3	22	2.5	산책로	135	356	소로3-14	야구장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

2. 주민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

3. 주민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공람의견서에 의한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재생과

4. 관계 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도시재생과 (☎063-540-3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공고 제2021-996호

소양천 하천기본계획(일부 변경)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소양천 하천기본계획(일부 변경)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일
완 주 군 수

1. 하천구역의 개요

하천명	등급	위 치	연장(km)	시 · 군	공람장소
소양천	지방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화심리, 신원리	2.32	완주군	완주군 재난안전과

2. 주민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게재 익일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3. 주민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완주군청 재난안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공람기간내 제출

4. 관계도서 : 붙임생략(공람장소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박은혜(☎063-290-2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보이용안내

도보 이용 안내

- ☞ 도보는 매주 금요일자로 발행됩니다.
- ☞ 도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도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도보는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 접속
 - 인기검색어 → 전북도보
 - 자치법규 → 전북도보
 - 도정정보 → 도정자료 → 전북도보

도보게재 의뢰 안내

- ☞ 근거법규 : 전북도보발행규정 제11조 및 도보게재위탁계약서 제3조
- ☞ 원고 접수 마감 : 매주 화요일
- ☞ 도보게재 의뢰 방법
 1.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 문서사송 혹은 FAX(063-280-2299)
⇒ 개별법령별 도보게재 근거 법규를 명시
 - 예시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조제○항근거
 2. 게재문안(공문 첨부물) 1부
 - 도청 실, 과, 사업소, 시·군의 경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송부하시고
 - 기타 도보위탁게재 계약기관은 USB메모리로 제출하거나
E-mail(jbdobo@korea.kr)로 보내주셔야 전라북도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